

변경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1. 펀드명 : 하나 IT 코리아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2024.01.01 시행)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2024.01.25 시행)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4년 05월 03일

4. 대비표

구분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표지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2024.01.25 시행)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u>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는</u>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투자비용	정기갱신	-	<u>정보 업데이트</u>
요약정보 - 투자실적추이	정기갱신	-	<u>정보 업데이트</u>
요약정보- 투자자유의 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2024.01.25 시행)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u>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는</u>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요약정보 - 과세</p>	<p>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2024.01.01 시행)</p>	<p>가입기간 : 2023 년 12 월 31 일까 지(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p> <p>세제혜택 :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 만원 한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배제합니다. 1~3. (생략) 4. <u>(신설)</u></p> <p>또한 가입자가-(생략)-배제합니다. <u>(신설)</u></p> <p>감면세액추징 : 가입일부터 3 년 미만의-(생략)-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정하지 아</u></p>	<p>가입기간 : 2024 년 12 월 31 일까 지(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p> <p>세제혜택 :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 만원 한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배제합니다. 1~3. (현행과 같음) 4. <u>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이하 “전환가입”이라 한다)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u></p> <p>또한 가입자가-(현행과 동일)-배제합니다. 다만, 전환가입을 하기 위하여 해지한 경우 해지 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p> <p>감면세액추징 : 가입일부터 3 년 미만의-(현행과 동일)-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p>
-----------------------------	---------------------------------------	---	---

		<p>이하,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감면받은 세액이 추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정합니다.</p> <p><u>1.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가입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u></p> <p><u>2.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u></p> <p><u>3. 계약 해지일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u></p> <p><u>가. 천재지변</u></p> <p><u>나. 가입자의 퇴직</u></p> <p><u>다. 사업장의 폐업</u></p> <p><u>라. 가입자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u></p> <p><u>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u></p> <p><u>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 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u></p>
--	--	---	--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1. 펀드명 : 하나 IT 코리아청년형소득공제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2024.01.01 시행)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2024.01.25 시행)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4.03.01 시행)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4 년 05 월 03 일

4. 대비표

구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 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2024.01.25 시행)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u>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습니다.</u></u>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 구의 연혁	정보 업데이트	-	2024 년 05 월 03 일: <u>-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u> <u>-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u>
5. 가. 운용전문인	정기갱신	-	<u>정보 업데이트</u>

력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2024.01.25 시행)	(생략) 또한,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u>	(현행과 같음) 또한,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u>
10. 다. 기타위험	기재사항 보완	집합투자기구해지위험: <u>1 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u>	집합투자기구해지위험: <u>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u>
11. 나. 3)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4.03.01 시행)	-	(환매가능여부 표 추가)
13. 나. 집합투자기	정기갱신	-	<u>정보 업데이트</u>

<p>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13.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p>			
<p>14. 4) 청년형 장기집합투 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p>	<p>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2024.01.01 시행)</p>	< 변경 전 1 >	< 변경 후 1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p>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p>	정기갱신	-	<u>정보 업데이트</u>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p>1. 다. 최근 2 개사 업연도 요약 재무내용</p> <p>1. 라. 운용자산규 모</p>	정기갱신	-	<u>정보 업데이트</u>

< 변경 전 1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사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
가입자격	<p>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가입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의6제1항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에 한합니다.</p> <p>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p>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p>* 청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p> <p>※다만,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p> <p>※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p>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p>
가입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저축계약기간	3년이상 5년이하 ※단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시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합니다.
가입한도	연간 6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합니다)
세제혜택	<p>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연240만원 한도)</p> <p>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배제합니다.</p> <p>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p>

	<p>경우</p> <p>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p> <p>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p> <p>4. (신설)</p> <p>또한 가입자가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배제합니다. (신설)</p>
<p>감면세액추징</p>	<p>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합니다.</p> <p>다만,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p> <p>1. (신설)</p> <p>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p> <p>2.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p> <p>가. 천재지변</p> <p>나. 가입자의 퇴직</p> <p>다. 사업장의 폐업</p> <p>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p> <p>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p> <p>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p>
<p>*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변경 후 1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사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
가입자격	<p>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가입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의6제1항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에 한합니다.</p> <p>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p>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p>* 청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p> <p>※다만,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p> <p>※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가입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저축계약기간	3년이상 5년이하 ※단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시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합니다.
가입한도	연간 6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합니다)
세제혜택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연240만원 한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배제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

	<p>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p> <p>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p> <p>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p> <p>4. <u>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이하 “전환가입”이라 한다)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u></p> <p>또한 가입자가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배제합니다. <u>다만, 전환가입을 하기 위하여 해지한 경우 해지 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u></p>
<p>감면세액추징</p>	<p>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의 6%를 추정세액으로 추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정세액 증가)합니다.</p> <p>다만, <u>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정하지 아니하며</u>,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정합니다.</p> <p>1. <u>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가입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u></p> <p>2.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p> <p>3.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p> <p>가. 천재지변</p> <p>나. 가입자의 퇴직</p> <p>다. 사업장의 폐업</p> <p>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p> <p>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p> <p>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로부터 1년이</p>

	<p>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p>
<p>*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